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1614
----------	------

제출일자 : 2019. 3. .

제 출 자 : 황소제 의원 외 9인

1. 주 문

- 현행 조세심판 제도 운영상 국세 행정과 지방세 행정간 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제안이유

- 가. 「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심판관회의가 아닌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심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나. 「국세기본법」 제80조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여 관계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 다.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국세와는 달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

3.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안 : “붙임”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

존경하옵는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장관님께 38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세심판원은 1975년 국세심판소로 발족하여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소속의 납세자 권리 주체 기관으로 조세심판원 결정회의는 2개 기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임심판관 2인 및 비상임 심판관 2인으로 구성되는 일반적 조세심판관 회의와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 심판관 전원(6명) 및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 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이 참여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9조의 “현황과세 원칙”에 대한 판단·결정 사례의 경우에는 골프장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결정일 수는 있어도 농지소유자 등

대다수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결정임이 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결정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변동을 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황”에 대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법리해석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지방세 행정의 일관성을 침해하여 국세 행정과 지방세 행정간 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심판관회의가 아닌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심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0조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여 관계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국세와는 달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현행 조세심판 제도 운영상 국세 행정과 지방세 행정간 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재정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대상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막중한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시의 발전과 38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국세기본법 개정요구(안) 1부. 끝

2019. 3.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일동

